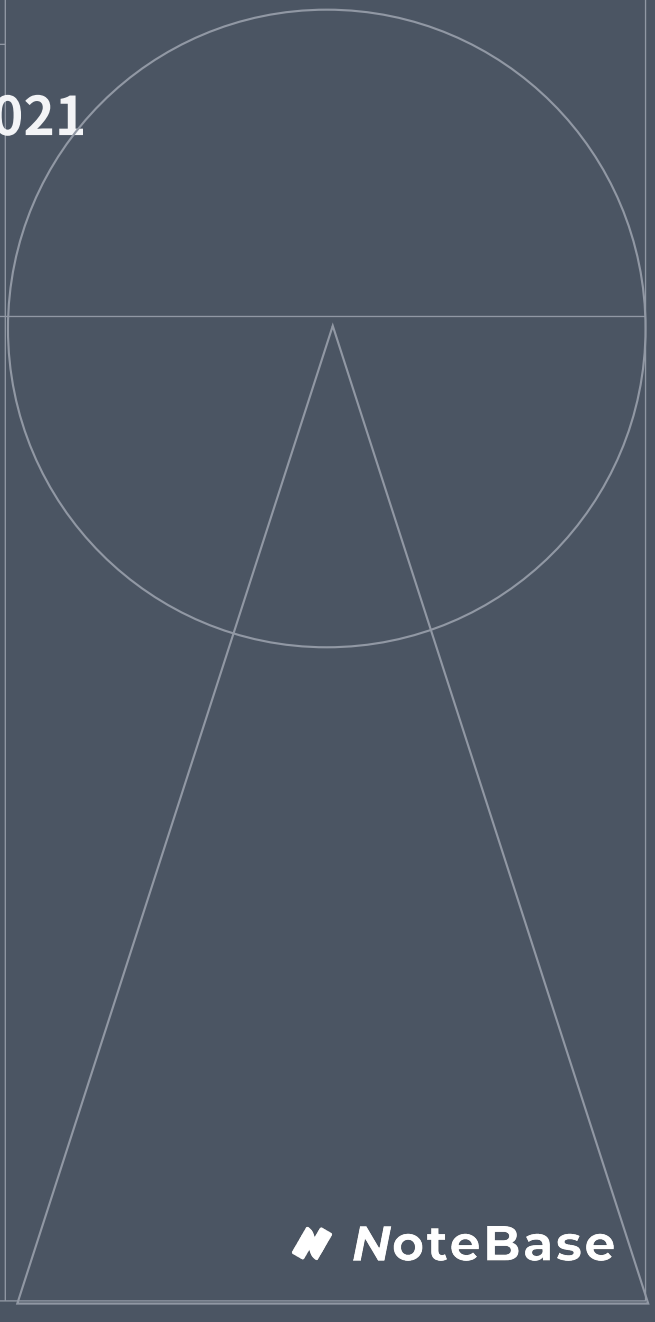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1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1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1**

**문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② 영세율을 통해 수출품에 대해 조세를 효과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다.

③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④ 매입세액 공제방식은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⑤ 어떤 상품이 면세의 대상인 경우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환급해 준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의 다단계 과세 방식,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소비형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방식의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 영세율은 매출세율을 0%로 적용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만, 면세는 매출세액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원칙적으로 매입세액도 공제·환급하지 않는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자본재 구입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인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각 단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그 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 부담이 발생한다. 거래총액에 중복 과세하는 거래액세와 달리 기업이 누적과세를 피하려고 수직적으로 통합할 유인이 줄어든다.
② O —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0이지만 수출품 생산에 투입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따라서 수출품에 국내 부가가치세가 남지 않게 할 수 있다.
③ O —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자본재 매입액을 즉시 공제하여 투자재에 대한 세 부담을 제거한다. 그 결과 자본비용이 낮아져 소득형이나 생산형 부가가치세보다 투자에 유리하다.
④ O —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구매자는 거래 증빙을 요구하고, 판매자의 매출은 구매자의 매입 자료와 대응된다. 이러한 상호 대조 기능은 매출 누락과 탈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환급해 준다'이다. 면세는 매출세액을 부과하지 않지만 관련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환급하지 않으므로 앞 단계의 세액이 비용에 포함된다. 매입세액까지 환급되는 것은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이다.

### 오답 포인트

⑤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공통점 때문에 면세와 영세율을 혼동하게 만든다. 매출세율만 보면 둘 다 최종 매출세액이 없지만, 매입세액 환급 여부는 서로 반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가가치세 선지는 먼저 매출세액 부과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나누어 판단한다. 매출세액 0과 매입세액 환급이 함께 나타나면 영세율이고, 매출세액이 없으면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으면 면세이다.

### 암기 포인트

영세율은 매출 0·매입 환급, 면세는 매출 면제·매입 불공제이다.

NoteBase

**문 2.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부과 시 발생하는 소득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납세자 선택의 왜곡현상을 의미한다.

②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해 조세징수액이 같으면 초과부담의 크기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③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상대가격이 변하는 경우 대체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④ 조세부과로 인하여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여 상쇄되면 수요량의 변화가 없게 되어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합한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세의 초과부담이 소득효과가 아니라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초과부담은 조세가 경제주체의 선택을 왜곡하여 조세수입을 넘어 추가로 발생시키는 후생손실이다. 상대가격을 바꾸는 조세는 대체효과를 일으켜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만,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 정액세는 소득효과만 일으키므로 원칙적으로 초과부담이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소득변화에 의해 나타나는'이다. 소득효과 자체가 아니라 조세로 상대가격이 변할 때 발생하는 대체효과가 선택을 왜곡하여 초과부담을 만든다.
② X — 틀린 표현은 '조세징수액이 같으면 초과부담의 크기는 동일'이다. 같은 세수를 거두더라도 세율과 수요·공급의 탄력성 등 행동반응이 다르면 거래량 감소와 초과부담의 크기도 달라진다.
③ O —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면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에서 다른 재화로 대체한다. 이 대체효과로 소비·생산 선택이 왜곡되어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수요량의 변화가 없게 되어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쇄되어 관찰되는 수요량이 그대로이더라도 대체효과와 상대가격 왜곡이 존재하면 초과부담은 발생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합한 것'이다. 그 감소분에는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이전된 부분도 포함된다. 초과부담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 합계에서 조세수입을 뺀 순후생손실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관찰되는 소득 또는 수요량 변화와 후생손실의 원인을 혼동하게 한다. 초과부담의 핵심은 최종 수요량 변화의 유무가 아니라 상대가격 변화와 대체효과이다. ⑤는 정부로 이전된 조세수입까지 사회적 손실로 계산하게 하는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는지 먼저 확인한다. 상대가격 변화가 있으면 대체효과와 선택 왜곡이 생겨 초과부담이 발생하며, 잉여 감소분을 제시하면 그중 조세수입을 제외한 부분만 초과부담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득효과는 구매력 변화, 대체효과는 상대가격 왜곡이다. 초과부담은 잉여 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뺀 순후생손실이다.

NoteBase

**문 3. 물품세(excise tax)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의 최적과세는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과세를 의미한다.

②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③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증가한다.

④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물품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보상수요량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초과부담도 없다.

⑤ 어떤 재화의 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수평이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직선인 경우 재화의 초기 균형가격은 $P_1$, 물품세의 세율은 t, 물품세 과세 이전과 이후의 균형 소비량(산출량)은 각각 $Q_1$과 $Q_2$, 그리고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을 e로 나타내면 물품세의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frac{1}{2}e(P_1Q_2)t^2$이 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물품세가 만드는 세금쐐기와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해 초과부담의 크기와 공식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공급곡선이 수평이므로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P_1$로 유지된다. 세율이 $t$이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상승분, 즉 세금쐐기는 $tP_1$이다.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 $e$는 절댓값으로 보고 과세 전 균형점에서 측정한다.

**사용할 공식**

직선 수요에서 초과부담은 세금쐐기와 거래량 감소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면적이다.

초과부담=(1)/(2)× 세금쐐기× 거래량 감소분

과세 전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 정의를 적용하면 $Q_1 - Q_2 = eQ_1t$이므로 기준 거래량은 과세 후 거래량 $Q_2$가 아니라 과세 전 거래량 $Q_1$이다.

**계산 과정**

세금쐐기는 $tP_1$이고 거래량 감소분은 $eQ_1t$이다. 따라서

초과부담=(1)/(2)(tP_1)(eQ_1t)=(1)/(2)e(P_1Q_1)t^2

이 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일정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조건 아래 물품세의 최적과세는 과세로 생기는 총초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율을 정하는 것이다.

② O — 물품세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사이에 세금쐐기를 만들고, 이 쐐기가 소비·생산 결정을 왜곡해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다만 초과부담의 실제 크기는 거래량이 얼마나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③ O —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 정확히는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량 감소가 커져 초과부담이 증가한다.

④ O —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상대가격이 변해도 보상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없고 초과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⑤ X — $\frac{1}{2}e(P_1Q_2)t^2$에서 $Q_2$가 잘못되었다. 과세 전 균형점의 탄력성을 사용하므로 올바른 식은 $\frac{1}{2}e(P_1Q_1)t^2$이다.

**오답 포인트**

⑤는 초과부담 삼각형의 높이인 거래량 감소분을 구할 때 탄력성의 기준 거래량을 $Q_2$로 바꿔 놓은 선지이다. 과세 전 균형점의 탄력성을 사용하면 거래량 감소분은 $eQ_1t$이므로 $P_1Q_1$이 공식에 들어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초과부담 문제에서는 먼저 세금쐐기와 거래량 감소분을 구한 뒤 두 값을 곱해 삼각형 면적의 $\frac{1}{2}$을 적용한다. 탄력성이 어느 균형점에서 정의되었는지 확인하면 $Q_1$과 $Q_2$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수평 공급·직선 보상수요에서 초과부담=(1)/(2)e(P_1Q_1)t^2이다. 초과부담은 탄력성에 비례하고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NoteBase

**문 4. 동등희생의 원칙에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직선이다.

②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③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

④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

⑤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동등비례희생에서 소득별 효용 희생의 비율을 같게 할 때 어떤 한계효용곡선이 누진세를 정당화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등비례희생은 납세 전 총효용에서 조세로 잃는 효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모든 납세자에게 같게 하는 원칙이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면서 직선으로 하락하면 고소득자가 같은 비율의 효용을 희생하기 위해 더 큰 소득 비율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누진세가 정당화된다. 반면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에 따라 누진·비례·역진을 구분하는 논리는 동등절대희생에서 적용되는 구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고 그 곡선이 우하향 직선이면, 동등한 효용 희생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 중 더 큰 비율을 조세로 부담하게 되어 누진세가 성립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동등비례희생의 누진성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이 조건은 동등절대희생에서 누진세가 되는지를 판별할 때 사용하는 조건이며, 동등비례희생의 정답 조건은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우하향 직선인 경우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가 누진세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동등절대희생에서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역진적인 결과가 나타나며, 동등비례희생의 누진성 조건도 아니다.
④ X — 틀린 부분은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이다. 한계효용이 일정하면 총효용이 소득에 비례하므로 같은 효용 희생 비율은 같은 소득 희생 비율을 뜻한다. 올바르게는 이 경우 비례세가 성립한다.
⑤ X — 틀린 부분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가 누진세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이 조건은 동등절대희생에서 비례세가 되는 경계 조건이며, 동등비례희생의 누진성 조건은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③·⑤는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에 따른 동등절대희생의 누진·역진·비례 구분을 동등비례희생에 옮겨 놓은 함정이다. 또한 ④의 한계효용 일정은 누진세가 아니라 비례세로 이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희생 기준이 절대액인지 비율인지 구분한다. 동등비례희생에서 누진세를 묻고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우하향 직선 조건이 제시되면 그 선지를 선택한다. 탄력성이 1보다 큰지·같은지·작은지에 따른 구분은 동등절대희생의 논리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비례희생의 누진성은 '체감하는 직선 한계효용', 탄력성의 크기별 누진·비례·역진 구분은 절대희생이다.

NoteBase

**문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일반적인 조세귀착은 시장에서 조세부담의 분배에 대해서만 고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세부담뿐 아니라 정부의 세수지출로 인한 편익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낸다하더라도, 세수지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실질적 조세부담 정도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조세귀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뿐 아니라 세수지출로 인한 편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① 일반균형 조세귀착
② 부분균형 조세귀착
③ 균형예산 조세귀착
④ 절대적 조세귀착
⑤ 차별적 조세귀착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세부담의 분배와 함께 그 세수로 이루어진 정부지출의 편익까지 고려하는 조세귀착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균형예산 조세귀착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만큼 정부지출을 시행할 때, 조세부담과 정부지출의 편익을 함께 고려하여 분배효과를 분석하는 개념이다.
일반균형과 부분균형은 분석 대상 시장의 범위를 구분하고, 절대적 조세귀착과 차별적 조세귀착은 어떤 정책 변화를 비교하는지를 구분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일반균형 조세귀착은 한 조세가 여러 시장의 가격과 소득에 미치는 연쇄효과까지 분석하는 개념이다. 이 선지의 '일반균형 조세귀착'은 지문의 설명과 다르며, 올바르게는 '균형예산 조세귀착'이다.
② X — 부분균형 조세귀착은 다른 시장의 조건을 일정하다고 보고 특정 시장에서 조세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분석한다. 이 선지의 '부분균형 조세귀착'은 지문의 설명과 다르며, 올바르게는 '균형예산 조세귀착'이다.
③ O — 지문은 납세자의 조세부담뿐 아니라 세수지출로 받는 편익까지 함께 고려한다고 하므로 균형예산 조세귀착에 해당한다.
④ X — 절대적 조세귀착은 다른 조세나 정부지출의 보상적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 특정 조세의 도입 또는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 선지의 '절대적 조세귀착'은 지문의 설명과 다르며, 올바르게는 '균형예산 조세귀착'이다.
⑤ X — 차별적 조세귀착은 정부지출을 일정하게 둔 채 한 조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의 분배효과를 비교한다. 이 선지의 '차별적 조세귀착'은 지문의 설명과 다르며, 올바르게는 '균형예산 조세귀착'이다.

### 오답 포인트

'일반균형'의 '균형'과 '균형예산'의 '균형'을 혼동하기 쉽다. 여러 시장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핵심이면 일반균형이고, 조세부담과 세수지출의 편익을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면 균형예산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서 '세금 부담과 정부지출의 편익을 함께 고려'한다는 표현을 찾으면 균형예산 조세귀착으로 판단한다. '여러 시장의 연쇄효과'는 일반균형, '특정 시장만 분석'은 부분균형, '조세 간 대체 비교'는 차별적 조세귀착으로 구분한다.

### 암기 포인트

세금과 세출을 함께 보면 균형예산 조세귀착이다.

NoteBase

**문 6.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시장의 경우 조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② 법인세의 법적 부담자는 기업이지만 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다.

③ 국민연금제도에서 기여금은 법적으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노동의 수요 및 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④ 독점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의 형태에 따라 귀착은 달라진다.

⑤ 독점시장에서 종량세와 종가세가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의 법적 납부의무자와 실제 부담자의 차이, 그리고 독점시장에서 조세가 가격과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

**핵심 개념**

조세의 전가는 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가격이나 임금의 변화를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게 세 부담을 넘기는 현상이고, 조세의 귀착은 그러한 조정이 끝난 뒤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뜻한다.
법적 납세자와 경제적 부담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등 시장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 독점기업은 각 가격에서 독립적으로 공급량을 정하는 공급곡선이 없으므로, 독점시장의 조세 귀착을 공급곡선의 형태로 설명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독점기업에 종량세가 부과되면 한계비용이 상승하고 가격도 오르지만, 표준적인 독점모형에서는 가격 상승분이 세액 전부와 같지 않다. 따라서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도 일부 부담한다.
② O. 법인세의 법적 납세의무자는 기업이지만, 과세 후 기업이 상품가격을 올리면 그 가격 상승분만큼 소비자가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나누어 지게 된다. 법적 귀속과 경제적 귀착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③ O. 국민연금 기여금을 법률상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하더라도, 임금 조정을 거친 실질 부담 비율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에 좌우된다.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큰 부담을 진다.
④ X. 틀린 표현은 '공급곡선의 형태에 따라'이다. 독점기업에는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독점시장의 조세 귀착은 수요곡선의 형태와 비용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야 한다.
⑤ O. 종량세는 생산물 한 단위마다 일정액을 부과하여 한계비용을 세액만큼 높이는 반면, 종가세는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어 기업이 얻는 한계수입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준다.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독점기업의 가격과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도 서로 다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완전경쟁시장의 수요·공급 분석을 독점시장에 그대로 적용한 데 있다. 독점기업은 동일한 생산량이라도 수요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공급곡선을 갖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법적 납부자와 실질 부담자를 구분하고, 실제 귀착은 상대적 탄력성으로 판단한다. 독점시장 선지에 '공급곡선의 형태'라는 표현이 나오면 독점기업에는 공급곡선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법적 부담은 법이 정하고, 실질 부담은 시장의 탄력성이 정한다. 독점기업에는 공급곡선이 없다.

NoteBase

**문 7.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에서 100까지는 10%, 100초과 200까지는 20%, 200초과에서는 30%이다. 갑의 총소득 240에서 각종 공제를 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180이다. 갑의 한계세율(A)과 실효세율(B)은?**

① (A): 10%, (B): 약 14.4%

② (A): 10%, (B): 약 10.8%

③ (A): 20%, (B): 약 10.8%

④ (A): 20%, (B): 약 14.4%

⑤ (A): 30%, (B): 약 14.4%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누진세제에서 과세가능소득이 속한 구간의 한계세율과 총소득 대비 실제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총소득은 240이고 공제 후 과세가능소득은 180이다.
세율은 과세가능소득 0~100에 10%, 100 초과~200에 20%, 200 초과분에 30%가 적용된다.
한계세율은 과세가능소득 180에 추가되는 마지막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산출세액을 총소득 240으로 나눈 비율이다.

### 사용할 공식

산출세액은 구간별 과세액을 합하여 구한다.
$T = 100 \times 0.10 + (180 - 100) \times 0.20$
실효세율은 다음과 같다.
실효세율=산출세액총소득× 100
누진세에서는 과세가능소득 전체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지 않고 각 구간에 해당 세율을 나누어 적용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 계산 과정

1. 과세가능소득 180은 100 초과~200 구간에 있으므로 한계세율은 20%이다.
2. 산출세액은 $100 \times 10\% + 80 \times 20\% = 10 + 16 = 26$이다.
3. 실효세율은 $26/240 \times 100 \approx 10.8\%$이다.

따라서 (A)는 20%, (B)는 약 10.8%이다.

NoteBase

### 선지 판단

① X — 한계세율 10%와 실효세율 약 14.4%가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과세가능소득 180이 두 번째 구간에 있으므로 한계세율은 20%이고, 실효세율은 26/240 × 100 ≈ 10.8%이다.
② X — 실효세율 약 10.8%는 맞지만 한계세율 10%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과세가능소득 180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20%이다.
③ O — 한계세율은 20%이고, 산출세액 26을 총소득 240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약 10.8%이므로 옳다.
④ X — 한계세율 20%는 맞지만 실효세율 약 14.4%가 틀렸다. 14.4%는 산출세액 26을 과세가능소득 180으로 나눈 값이며, 이 문항의 실효세율은 총소득 240을 분모로 하여 약 10.8%이다.
⑤ X — 한계세율 30%와 실효세율 약 14.4%가 모두 틀렸다. 30%는 과세가능소득이 200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되므로, 올바르게는 한계세율 20%, 실효세율 약 10.8%이다.

###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한계세율을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로 오해하는 것과 실효세율의 분모를 과세가능소득 180으로 잡는 것이다. 특히 ④의 약 14.4%는 26/180 × 100으로 계산한 값이지만, 이 문항에서는 총소득 240을 분모로 사용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공제 후 과세가능소득이 속한 구간에서 한계세율을 찾는다. 다음으로 구간별 세액을 합산한 뒤, 실효세율의 분모가 총소득인지 과세가능소득인지 문제의 정의에 맞게 확인하여 계산한다.

### 암기 포인트

한계세율은 마지막 소득 1단위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실제 세액을 기준 소득으로 나눈 평균적인 세부담률이다.

NoteBase

**문 8. 완전경쟁시장 개별기업의 수요함수는 $P = 220 - Q$이고, 공급곡선은 $P = 40 + 2Q$이다. 이때 60의 종량세를 공급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가격은 160에서 180으로 상승한다.

②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1,200이다.

③ 시장의 거래량은 60에서 40으로 줄어든다.

④ 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은 2,400이다.

⑤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800이다.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종량세를 공급곡선에 더해 과세 전후의 균형가격과 거래량을 구하고, 조세수입·조세부담·초과부담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수요함수는 $P = 220 - Q$, 공급함수는 $P = 40 + 2Q$이다. 단위당 60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기준 공급곡선은 $P = 40 + 2Q + 60 = 100 + 2Q$으로 위쪽 이동한다.

### 사용할 공식

과세 전후 균형은 각각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을 같게 두어 구한다. 조세수입은 세율 × 과세 후 거래량, 초과부담은 (1)/(2)× 세율 × 거래량 감소분이다. 초과부담 공식은 조세 때문에 사라진 거래에서 발생하는 삼각형 모양의 잉여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다.

### 계산 과정

1. 과세 전: $220 - Q = 40 + 2Q$이므로 $Q = 60$, $P = 160$이다.
2. 과세 후: $220 - Q = 100 + 2Q$이므로 $Q = 40$이다. 소비자 지불가격은 $P = 180$, 공급자 수취가격은 $180 - 60 = 120$이다.
3. 조세수입은 $60 \times 40 = 2{,}400$이다.
4. 소비자 부담은 가격 상승분 20에 과세 후 거래량 40을 곱한 $20 \times 40 = 800$이다.
5. 초과부담은 $\frac{1}{2} \times 60 \times (60 - 40) = 6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소비자 지불가격은 과세 전 160에서 과세 후 180으로 20 상승한다.
② X. 초과부담이 1,200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거래량 감소분 20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면적이므로 초과부담은 $\frac{1}{2} \times 60 \times 20 = 600$이다. 1,200은 삼각형의 $\frac{1}{2}$을 빠뜨린 값이다.
③ O. 균형거래량은 과세 전 60에서 과세 후 40으로 감소한다.
④ O.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액 60에 과세 후 거래량 40을 곱한 2,400이다.
⑤ O. 소비자가 부담하는 단위당 세액은 가격 상승분 20이고, 총소비자 부담은 $20 \times 40 = 800$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1,200은 세율 60과 거래량 감소분 20만 곱하고 삼각형 면적의 $\frac{1}{2}$을 누락한 값이다. 또한 조세부담은 과세 후 실제 거래량 40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세 전 거래량 60을 곱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량세 문제는 공급곡선에 세액을 더한 뒤 과세 전후 균형을 각각 구하고, 가격 상승분·공급자 수취가격 하락분·거래량 감소분을 분리한다. 그다음 조세수입은 직사각형, 초과부담은 삼각형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조세수입은 세율×과세 후 거래량, 초과부담은 (1)/(2)× 세율×거래량 감소분이다.

NoteBase

**문 9. 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②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③ 조세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의 형태가 된다.

④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정도와 관계없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

⑤ 경기변동 시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누진세의 판단 기준과 경제적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는 누진세가 아니라 비례세를 나타낸다는 점이 핵심이다.

### 핵심 개념

누진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조세이다. 비례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평균세율이 일정하며, 조세함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세액이 소득에 정비례하므로 비례세가 된다.

### 선지별 해설

① O — 누진세로 한계세율이 높아지면 과세소득을 줄이거나 소득의 형태·시기를 바꾸려는 조세회피 유인이 생길 수 있다.
② O — 높은 한계세율은 노동·저축·투자 같은 경제활동의 유인을 왜곡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이다.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에서는 세액이 소득에 정비례하여 평균세율이 일정하므로 비례세가 된다. 올바르게는 누진세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낼 때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세율이 상승하도록 조세함수가 설정된다고 해야 한다.
④ O — 누진세는 납세자의 소득 등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을 정하는 능력원칙에 기초하므로, 정부 서비스의 수혜 정도와 조세부담이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⑤ O — 경기가 좋아 소득이 늘면 세부담이 더 크게 증가하고, 경기가 나빠 소득이 줄면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여 가처분소득의 변동을 완화한다. 따라서 누진세는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 오답 포인트

③의 '선형'이라는 말만 보고 세액이 소득과 함께 증가하므로 누진세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는 세액과 소득의 비율인 평균세율이 일정하므로 비례세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제가 누진적인지는 세액 자체의 증가 여부가 아니라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상승하는지로 판단한다. 평균세율이 상승하면 누진세, 일정하면 비례세, 하락하면 역진세이다.

**암기 포인트**

누진세는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세율이 상승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형 조세함수는 평균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이다.

NoteBase

**문 10. 시장균형에서 A상품의 소비량이 1,000이고 가격이 1,000이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각각 1/10, 1/10이다. 10%의 종가세가 부과되었을 때, 조세로 인한 사중손실의 크기는?**

① 10
② 50
③ 100
④ 250
⑤ 5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종가세가 만드는 가격 격차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해 거래량 감소분을 구한 뒤, 사중손실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균형거래량은 1,000, 균형가격은 1,000이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각각 0.1이고 세율은 10%이다. 세금이 만드는 단위당 가격 격차는 $T = 1{,}000 \times 0.1 = 100$이다.

**사용할 공식**

가격 격차가 $T$일 때 거래량 감소분은 다음과 같다.

$$\Delta Q = \frac{Q}{P} \cdot \frac{|\varepsilon_d|\varepsilon_s}{|\varepsilon_d| + \varepsilon_s} \cdot T$$

사중손실은 거래량 감소로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이므로 다음 공식을 사용한다.

$$DWL = \frac{1}{2} T \Delta Q$$

**계산 과정**

1. 단위당 조세 격차는 $T = 1{,}000 \times 10\% = 100$이다.
2. 거래량 감소분은 $\Delta Q = \frac{1{,}000}{1{,}000} \times \frac{0.1 \times 0.1}{0.1 + 0.1} \times 100 = 5$이다.
3. 따라서 $DWL = \frac{1}{2} \times 100 \times 5 = 250$이다.

NoteBase

### 선지 판단

① X — 사중손실 계산값은 10이 아니라 250이다.
② X — 사중손실 계산값은 50이 아니라 250이다.
③ X — 사중손실 계산값은 100이 아니라 250이다.
④ O — 조세 격차 100과 거래량 감소분 5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250이므로 옳다.
⑤ X — 500은 $100 \times 5$로 삼각형 넓이의 $\frac{1}{2}$을 빠뜨린 값이며, 올바른 값은 250이다.

### 오답 포인트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각각 따로 적용해 거래량 변화를 더하면 안 된다. 소비자가격 상승분과 생산자가격 하락분의 합이 전체 조세 격차 100이므로 두 탄력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중손실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이므로 $\frac{1}{2}$을 곱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가세율을 단위당 가격 격차로 바꾸고, 수요·공급 탄력성의 조화 형태 $\frac{|\varepsilon_d|\varepsilon_s}{|\varepsilon_d|+\varepsilon_s}$로 거래량 감소분을 구한 다음 (1)/(2)×가격 격차×거래량 감소분을 계산한다.

### 암기 포인트

조세의 사중손실은 '세금 쐐기 × 줄어든 거래량 ÷ 2'이다.

NoteBase

**문 11.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식 중에서 완전통합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② 법인방식(corporation method)

③ 귀속제도(imputation system)

④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⑤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 − up* method)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완전통합은 배당된 이익뿐 아니라 사내유보된 이익까지 모두 주주 단계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통합은 법인의 배당이익과 유보이익을 모두 최종 주주에게 귀속시켜 주주의 개인소득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자본이득방식에서는 법인세를 폐지하고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유보이익으로 생긴 주식가치 증가는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이득으로 과세한다. 반면 부분통합은 주로 배당된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줄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자본이득방식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배당은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사내유보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는 발생한 자본이득으로 과세한다. 배당과 유보이익을 모두 주주 단계에서 과세하므로 완전통합방식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법인방식이 완전통합방식이다'라는 판단이다. 법인방식은 법인을 독립된 과세단위로 보아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모든 법인이윤을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로 과세하는 완전통합방식이 아니다.
③ X — 틀린 부분은 '귀속제도가 완전통합방식이다'라는 판단이다. 귀속제도는 배당의 재원이 된 이윤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를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배당된 이익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부분통합방식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차등세율제도가 완전통합방식이다'라는 판단이다. 차등세율제도는 배당이익에 사내유보이익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배당 부분의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부분통합방식이다.
⑤ X — 틀린 부분은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완전통합방식이다'라는 판단이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배당소득에 가산한 뒤 그 법인세 상당액을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하므로, 배당된 이익에 대한 부분통합방식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과 ⑤는 법인세를 개인소득세 계산에 반영하므로 완전통합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배당된 이익의 이중과세를 조정할 뿐 사내유보이익까지 곧바로 주주 단계에 통합하지 않는다. ④도 배당 부분의 법인세율만 낮추므로 같은 함정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당과 사내유보를 모두 주주 단계에서 과세하면 완전통합, 배당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세액공제 등으로 이중과세를 줄이면 부분통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본이득방식은 배당과 유보를 모두 포착하는 완전통합이고, 귀속·차등세율·배당세액공제는 배당 중심의 부분통합이다.

NoteBase

**문 12.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 = a - tE$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보조금, a: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① a가 50만원, t가 0.2일 때 E가 250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② a가 50만원, t가 0.25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는 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

④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a와 t이다.

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부의 소득세제에서 보조금 $S = a - tE$의 중단점과 정책변수 변화가 보조금에 미치는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S$는 보조금, $a$는 소득이 없을 때 받는 기초수당, $t$는 벌어들인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E$는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이다. 보조금을 받는 조건은 $S > 0$이고, 보조금이 중단되는 소득은 $S = 0$이 되는 지점이다.

**사용할 공식**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S = a - tE$$

보조금 중단점은 $S = 0$을 대입하여 구한다.

$$E = \frac{a}{t}$$

또한 $E$가 일정하면 $t$가 낮아질수록 차감액 $tE$가 작아지므로 $S$는 커진다.

**계산 과정**

1. $a = 50, t = 0.2, E = 250$을 대입하면 $S = 50 - 0.2 \times 250 = 0$이므로 보조금이 중단된다. 금액의 단위는 만원이다.
2. $a = 50, t = 0.25$일 때 중단점은 $E = 50/0.25 = 200$이다. 따라서 양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 $E$가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tE$가 감소하므로 $S = a - tE$는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S = 50 - 0.2 \times 250 = 0$이므로 소득 250만원에서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② O. 중단점은 $E = a/t = 50/0.25 = 200$만원이다. $S > 0$인 보조금 수급 조건은 $E < 200$만원이다.

③ X. $E$가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차감액 $tE$가 줄어 보조금 $S$는 증가한다. 틀린 표현인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는 '보조금은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식에서 정부가 제도의 수준과 감액 속도를 정하기 위해 선택하는 정책변수는 기초수당 $a$와 한계세율 $t$이다. $E$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므로 정부의 정책변수가 아니다.

⑤ O. 다른 조건, 특히 $t$와 $E$가 일정하면 $a$가 커질수록 모든 소득수준에서 $S$가 증가하고 보조금 중단점 $a/t$도 높아지므로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오답 포인트**

③은 한계세율 $t$의 하락을 보조금의 하락과 같은 방향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식에서는 $tE$를 빼므로 $t$와 $S$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편 보조금 중단점에서는 $S = 0$이고, 실제로 양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단점보다 소득이 작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단 소득은 $S = 0$을 대입해 $E = a/t$로 구한다. 정책변수의 방향은 $S = a - tE$의 부호를 본다. $a$가 커지면 $S$가 커지고, $E$가 일정할 때 $t$가 커지면 $S$는 작아진다.

**암기 포인트**

부의 소득세제는 '중단점 $a/t$, $a$와 보조금은 같은 방향, $t$와 보조금은 반대 방향'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3.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공급탄력성이 0이면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조세의 자본화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③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조세로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있다.

④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된다.

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다.

**정답 2번**

**쟁점**

부동산 조세를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구분하고, 공급탄력성과 조세의 자본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조세의 자본화는 앞으로 부담할 보유세의 현재가치가 부동산의 현재 가격에 반영되는 현상이다. 보유세가 늘면 매수자가 지불하려는 가격은 그만큼 낮아진다.

**핵심 구분**

부동산 취득 단계에는 취득세, 보유 단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 단계에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으로 대응한다. 2021년 시행 법령상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다.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과세 후에도 거래량이 변하지 않아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보유세 인상은 미래 세부담의 현재가치를 높이므로 조세의 자본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부동산의 공급탄력성이 0이면 과세로 가격이나 세후수익은 변할 수 있어도 공급량과 거래량은 줄지 않는다. 거래량 왜곡이 없으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X — 보유세가 인상되면 매수자가 앞으로 부담할 세금의 현재가치가 커져 현재 지불하려는 부동산 가격은 낮아진다. 틀린 표현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이고, 올바른 표현은 '조세의 자본화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이다.
③ O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이다.
④ O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⑤ O —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즉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표현이 함정이다. 보유세 인상으로 자산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미래 세부담이 현재 가격에서 차감되므로 가격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보유세이지만 전자는 지방세, 후자는 국세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조세를 취득·보유·양도 단계에 배치한 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한다. 경제적 효과는 과세로 거래량이 변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부담을 판단하고, 보유세의 자본화는 미래 세부담 증가가 현재 자산가격 하락으로 반영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보유세 인상은 자본화를 통해 현재 부동산 가격을 낮춘다.

NoteBase

**문 14.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다.

②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난다.

③ 자본의 사용자비용에는 포기된 다른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④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⑤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면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조겐슨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구성하는 요소와 법인세가 투자에 중립적이 되는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재 한 단위를 일정 기간 사용할 때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이다. 자금의 기회비용, 경제적 감가상각, 자본재 가격 변화 및 조세 요인이 반영되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용자비용이 낮을수록 원하는 자본량과 투자가 증가한다.
즉시 비용처리는 투자액 전부를 취득 시점에 공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급이자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투자지출과 투자수익에 조세가 대칭적으로 적용되어 한계투자의 수익성 순위가 바뀌지 않으므로 투자에 중립적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서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과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비교하여 적정 자본량을 정하므로, 사용자비용은 핵심 투자결정요인이다.
② O. 사용자비용이 하락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이 사용자비용을 웃도는 투자 범위가 넓어져 적정 자본량과 투자가 증가한다.
③ O. 자본재에 묶인 자금을 다른 투자에 사용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은 포기된 수익이므로 자본 사용의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④ O. 자본재 구입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하면서 지급이자는 별도로 공제하지 않으면 투자지출과 그 수익에 대한 과세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계투자의 세전·세후 채택 여부가 달라지지 않아 법인세가 투자에 중립적이다.
⑤ X. 틀린 부분은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면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다.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더라도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는 반면 차입이자는 공제되므로 자기자본 조달과 차입 조달의 세후 사용자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올바르게는 자기자본의 기회비용까지 차입이자와 동등하게 공제하는 등 자금조달 방식에 따른 세제상 차이가 없어야 투자에 대한 중립성이 성립한다.

### 오답 포인트

⑤는 감가상각률의 일치만 보고 중립성을 판단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경제적 감가상각의 정확한 공제는 감가상각 부분의 왜곡을 줄이지만, 자기자본의 귀속이자 비공제와 차입이자 공제에서 생기는 자금조달상의 비대칭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의 투자 중립성은 감가상각 조건만 따로 보지 않고 투자지출의 공제 시점, 이자비용의 공제 여부, 자기자본과 차입금의 세제상 대칭성을 함께 확인한다. 즉시 비용처리와 이자공제 불허의 조합은 중립적이지만, 차입이자만 공제하는 구조는 자금조달 방식에 따른 사용자비용 차이를 만든다.

### 암기 포인트

사용자비용 하락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 즉시 비용처리와 이자공제 불허는 중립적이며, 차입이자만 공제하면 자기자본과의 비대칭이 남는다.

NoteBase

**문 15. 토지에 부과된 조세의 자본화(capit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화의 크기는 기간 당 할인율에 비례한다.

②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작아진다.

③ 조세부담은 토지임대사용자에게 귀착된다.

④ 토지가격의 변동 폭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 가치보다 크게 나타난다.

⑤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면 미래 조세부담이 미리 예측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조세가 토지가격과 조세부담의 귀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핵심 개념**

조세의 자본화는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앞으로 부과될 조세가 예상될 때, 그 미래 조세부담의 현재가치만큼 자산가격이 미리 하락하는 현상이다. 매기 조세액을 $T$, 할인율을 $r$라고 하고 조세가 영구히 일정하다면 가격 하락분은 $T/r$이다. 따라서 조세액이 클수록 가격 하락분은 커지고,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기간 당 할인율에 비례한다'이다. 미래 조세액이 같다면 자본화되는 현재가치는 할인율에 반비례하므로, 올바르게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자본화의 크기가 작아진다.
② X — 틀린 표현은 '세율이 높을수록 … 작아진다'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세율 상승은 미래 조세부담을 늘리므로, 올바르게는 자본화되는 금액과 그에 따른 토지가격 하락 폭이 커진다.
③ X — 틀린 표현은 '토지임대사용자에게 귀착된다'이다.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조세가 완전히 자본화되면 조세 도입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가격 하락이라는 자본손실을 부담한다. 미래 매수자는 조세부담의 현재가치만큼 낮은 가격에 토지를 사므로 그만큼 보상받는다.
④ X — 틀린 표현은 '현재 가치보다 크게'이다. 완전한 자본화를 가정하면 토지가격의 하락 폭은 미래 조세부담의 현재가치와 같으며, 그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⑤ O —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 대한 미래 조세부담이 예상되어 그 현재가치만큼 토지가격이 미리 하락하는 현상이 조세의 자본화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할인율과 현재가치의 관계를 반대로 제시하고, ③은 실제 납세 시점의 지급자와 경제적 부담의 귀착자를 혼동하게 한다. 자본화에서는 미래 세금의 현재가치가 가격에 선반영되므로 조세 도입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본손실을 부담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자산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공급이 고정되고 미래 조세가 예상되면 '미래 조세의 현재가치만큼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 영구히 일정한 조세라면 $T/r$ 이므로 조세액과는 같은 방향, 할인율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암기 포인트**

고정공급 자산의 조세 자본화는 '미래 세금의 현재가치만큼 오늘 가격 하락'이다.

NoteBase

**문 16. 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고, 근로소득만 존재한다.)**

① 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②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이면 시장임금률은 상승한다.

③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전부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④ 실질소득의 감소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일하여 노동공급이 일정하면 순임금률과 시장임금률은 동일하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근로소득에 비례세를 부과할 때 시장임금률과 순임금률 사이에 조세 쐐기가 생기며, 대체효과·소득효과와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노동공급 및 조세 귀착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례소득세율을 $t$, 세전 시장임금률을 $w$라고 하면 근로자가 받는 순임금률은 $(1-t)w$이다. 세금은 여가의 기회비용인 순임금률을 낮추므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여가가 정상재이면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효과가 상쇄되어 노동공급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세율이 양수인 한 시장임금률과 순임금률 사이의 조세 쐐기는 남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세율이 높아질수록 순임금률의 왜곡과 노동·여가 선택의 변화가 커지므로 초과부담도 커진다. 일반적인 근사에서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② O — 우상향하는 노동공급에서는 과세로 주어진 시장임금률에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따라서 새로운 균형에서는 세전 시장임금률이 상승하고 고용량은 감소하며, 조세 부담이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나뉜다.
③ O —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세금에도 노동공급량이 변하지 않는다. 세전 시장임금률은 변하지 않고 순임금률만 세금만큼 낮아지므로 조세 부담이 전부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④ O — 여가가 정상재이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여가 수요가 줄고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이것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소득효과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순임금률과 시장임금률은 동일하다'이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크기가 같아 노동공급량이 일정하더라도 조세 쐐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세율이 양수일 때 순임금률은 $(1-t)$ ×시장임금률이므로 시장임금률보다 낮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노동공급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임금률의 조세 쐐기가 없다'는 뜻으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쇄는 노동공급량에 관한 설명일 뿐, 세전 임금과 세후 임금을 같게 만들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시장임금률 $w$와 순임금률 $w_n$을 구분하고 $w_n = (1 - t)w$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순임금률 하락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 여가가 정상재일 때의 소득효과는 노동공급 증가 방향임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조세 귀착은 법적으로 누가 납부하는지가 아니라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근로소득세는 '대체효과는 노동 감소, 소득효과는 노동 증가'이며, 두 효과가 상쇄되어도 '순임금률 < 시장임금률'의 조세 쐐기는 남는다.

NoteBase

**문 17. 투자자들이 자산유형별로 상이한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자산을 구성한다고 한다.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회피도가 체증적인 경우,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대수익률이 하락하여 안전성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② 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커진다.

③ 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④ 손실상계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에는 영향이 없다.

⑤ 손실상계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한해 위험자산의 비중은 감소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비례소득세가 위험자산의 수익과 손실을 대칭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정부의 위험 분담과 투자자의 자산구성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손실상계는 위험자산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고 손실이 나면 그 손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환급을 허용하는 대칭적 과세이다. 정부가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함께 부담하므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순위험이 줄고, 투자자는 위험자산의 보유 비중을 늘려 세후 위험과 수익을 조정하려 한다.
손실상계를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이익은 과세하면서 손실은 투자자가 전부 부담한다. 이때 위험자산의 상대적 매력이 낮아지는 대체효과는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지만, 소득 감소로 정상재인 안전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소득효과는 위험자산 비중을 늘린다. 따라서 최종 효과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면 안전자산을 선택할 때 포기하는 기대수익도 작아지므로 안전성의 기회비용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이 대체효과만 보면 위험자산 비중은 작아지지만, 손실상계 여부에 따른 소득효과와 위험 분담까지 고려해야 전체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인 '안전성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는 '안전성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소'로 고쳐야 한다.
② O — 완전손실상계에서는 정부가 위험자산의 이익과 손실을 같은 비율로 분담하여 투자자의 세후 위험을 낮춘다. 투자자는 감소한 세후 위험을 보충하기 위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므로 옳다.
③ X — 완전손실상계에서는 손실만 공동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과 손실을 모두 정부와 투자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손실에는 세액공제·환급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틀린 표현인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는 '투자 수익과 손실 모두에 대해'로 고쳐야 한다.
④ X — 손실상계를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이익은 과세되고 손실은 온전히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위험자산의 상대적 매력이 변한다. 따라서 위험자산 비중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올바르게는 감소 방향의 대체효과와 증가 방향의 소득효과 중 어느 쪽이 큰지에 따라 비중이 달라진다.
⑤ X — 손실상계가 없을 때 소득효과는 정상재인 안전성의 수요를 줄여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이고, 대체효과는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다. 따라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 위험자산 비중은 감소한다'는 방향이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소득효과가 더 크면 위험자산 비중이 증가하고, 대체효과가 더 크면 감소한다.

### 오답 포인트

③은 완전손실상계를 '손실만 정부가 분담하는 제도'처럼 표현한 것이 함정이다. 완전손실상계의 핵심은 이익과 손실의 대칭적 처리이다. ⑤는 손실상계가 없을 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을 서로 뒤집어 놓았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손실상계가 완전한지를 확인한다. 완전손실상계이면 정부가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분담하므로 위험자산 비중 증가로 판단한다. 손실상계가 없으면 대체효과는 위험자산 비중 감소, 안전성이 정상재일 때 소득효과는 위험자산 비중 증가로 구분한 뒤 두 효과의 크기를 비교한다.

### 암기 포인트

완전손실상계는 이익·손실의 대칭적 분담과 위험투자 증가, 무손실상계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충돌이다.

NoteBase

**문 18. A, B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Z)에 대한 수요함수는 각각 $Z_A = 100 - 20P$, $Z_B = 100 - 10P$이고, 이를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3일 때, B의 린달가격(부담비율)은? (단, P는 공공재 가격이다.)**

① $\frac{2}{5}$
② $\frac{1}{2}$
③ $\frac{2}{3}$
④ 1
⑤ $\frac{5}{3}$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공공재의 린달균형에서는 각 개인의 한계지불의사를 수직으로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며, 개인의 부담비율은 그 사람의 린달가격을 한계비용으로 나누어 구한다.

### 조건 정리

A와 B는 같은 양의 공공재를 공동으로 소비한다. 따라서 각 수요함수를 역수요함수로 바꾼 뒤 동일한 공공재 수량에서 개인별 가격을 합해야 한다. 한계비용은 3이며, 구해야 할 값은 B의 린달가격이 전체 한계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담비율이다.

### 사용할 공식

A와 B의 역수요함수는 각각
$P_A = 5 - \frac{Z}{20}, \qquad P_B = 10 - \frac{Z}{10}$
이다. 린달균형 조건은
$P_A + P_B = MC$
이고, B의 부담비율은
$\frac{P_B}{MC}$
이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같은 수량을 소비하므로 시장수요를 구할 때 개인별 한계지불의사를 수직으로 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역수요를 수직으로 합하면 $P_A + P_B = 15 - \frac{3Z}{20}$이다.
2. 이를 한계비용 3과 같게 두면 $15 - \frac{3Z}{20} = 3$이므로 균형 공공재 수량은 $Z = 80$이다.
3. 균형수량을 B의 역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_B = 10 - \frac{80}{10} = 2$이다.
4. 따라서 B의 부담비율은 $\frac{P_B}{MC} = \frac{2}{3}$이다. 참고로 A의 린달가격은 $P_A = 1$이며, $P_A + P_B = 1 + 2 = 3$으로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선지 판단**

① X — $\frac{2}{5}$는 계산된 B의 부담비율과 다르다. 올바른 B의 부담비율은 $\frac{2}{3}$이다.
② X — $\frac{1}{2}$는 A와 B가 비용을 똑같이 나눈다고 잘못 가정한 값이다. 올바른 B의 부담비율은 $\frac{2}{3}$이다.
③ O — B의 린달가격은 2이고 전체 한계비용은 3이므로 부담비율은 $\frac{2}{3}$이다.
④ X — 1은 A의 린달가격 자체이지 B의 부담비율이 아니다. 올바른 B의 부담비율은 $\frac{2}{3}$이다.
⑤ X — $\frac{5}{3}$은 부담비율이 1을 초과하여 A와 B의 부담비율 합이 1이 되는 조건에도 어긋난다. 올바른 B의 부담비율은 $\frac{2}{3}$이다.

**오답 포인트**

린달가격 2와 부담비율 $\frac{2}{3}$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공공재 수요는 사적재처럼 수평합하지 않고, 같은 수량에서 개인별 역수요를 수직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인별 수요를 역수요로 변환한 뒤 수직합하고, 그 합을 한계비용과 같게 두어 공공재 수량을 구한다. 이어 해당 개인의 역수요에 균형수량을 대입해 린달가격을 구하고 이를 한계비용으로 나누면 부담비율이 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의 린달균형은 한계지불의사의 수직합이 한계비용과 같고, 개인 부담비율은 개인 린달가격을 한계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NoteBase

**문 19. 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도입이 용이하다.

②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③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④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⑤ 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지방분권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고,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배분하여 지역이 자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결정·공급하게 하는 제도이다. 지역 특성과 주민 선호를 반영하고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지역별 재정능력의 차이가 크면 공공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같은 이전재원은 자체재원이 아니므로 이를 받는다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용도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이전재원은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한다.

### 선지별 해설

① O — 지방정부는 지역의 인구·산업·환경 등 서로 다른 여건을 가까이에서 파악하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 쉽다.
② O — 의사결정이 주민과 가까운 수준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주민의 선호와 욕구를 행정 및 공공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③ O — 주민과 기업의 이동 가능성 및 지방정부 간 비교는 자치단체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여 공공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이다. 교부금은 지방의 자체재원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이전하는 재원이므로 교부금 수입이 늘어난다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지방의 재정 부족을 보완하지만,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을 높일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자체재원은 아니다'이다.
⑤ O — 지방세원과 소득 수준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분권화가 진행될 때 재정능력이 약한 지역은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려워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④는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재정자립도 상승과 혼동하게 만든다. 교부금은 재정 부족을 보완하는 이전재원일 뿐 자체재원이 아니다. 특히 용도에 자율성이 있는 이전재원이 재정자주도에는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재정자립도와 혼동하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역 맞춤형 정책·주민 선호 반영·지방정부 간 경쟁은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지역 간 재정력 격차는 단점으로 판단한다. 재정지표가 나오면 자체재원 확대인지 중앙정부 이전재원 확대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 암기 포인트

분권의 장점은 맞춤·참여·경쟁, 단점은 지역 격차이다. 자체재원은 재정자립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재정자주도와 연결된다.

NoteBase

**문 20. 공공서비스의 가격설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②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③ 기존시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제외한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④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면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⑤ 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공공서비스 가격을 정할 때 배분 효율성을 위한 한계비용 가격설정, 외부성의 내부화, 시설용량의 희소성 지대, 램지가격의 탄력성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가격을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로 공급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과 같게 하여 소비자의 한계편익과 공급의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는 방식이다.
외부성이 있으면 사적 한계비용이 아니라 외부효과까지 반영한 한계사회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한다.
시설용량이 고정되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혼잡 또는 희소성에 따른 경제적 지대를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램지가격은 총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제약 아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서비스에 더 높은 한계비용 대비 가격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이다. 소비량에 비례한 부담 자체가 효율적 가격설정의 일반 원칙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각 소비 단위의 한계사회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형평성을 추구할 때에는 부담능력이나 분배 효과를 별도로 고려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외부성이 있는데도 단순히 '한계비용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에서 관찰되는 사적 한계비용만으로는 부족하며, 올바르게는 외부비용이나 외부편익을 반영한 한계사회비용을 기준으로 가격 또는 보조금을 조정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평균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제외'한다는 것이다. 기존 시설의 용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초과 수요가 있으면 이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혼잡·희소성에 따른 경제적 지대를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한계운영비용에 희소성 지대를 반영한 가격을 설정한다.

④ O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여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을 수 있다. 이때 가격을 한계비용과 일치시키면 소비자의 한계편익과 공급의 한계비용이 같아져 배분 효율성이 달성된다. 다만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적자가 생길 수 있다는 재정수지 문제는 별개이다.

⑤ X
틀린 부분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한다는 것이다. 램지의 역탄력성 원칙에 따르면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량 감소가 작으므로 한계비용에 대한 가격 가산을 더 크게 한다. 올바르게는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서 더 멀게 설정한다.

**오답 포인트**

④에서 한계비용 가격설정이 적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배분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사실을 혼동하기 쉽다. 적자 발생은 비용 회수의 문제이고, 가격과 한계비용의 일치는 효율성의 문제이다. 또한 ⑤는 램지의 역탄력성 원칙의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효율성 기준은 가격과 한계사회비용의 일치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외부성은 사회적 비용·편익 반영, 시설 초과 수요는 희소성 지대 포함, 램지가격은 저탄력 수요에 큰 가격 가산이라는 순서로 판단한다. 규모의 경제에서는 한계비용 가격설정의 효율성과 그에 따른 적자 가능성을 분리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효율성은 한계사회비용, 혼잡은 희소성 지대, 램지는 저탄력·고가산, 규모의 경제에서는 효율성과 적자를 분리한다.

NoteBase

**문 21.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용가능경계 상의 각 점에서는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만 충족된다.
ㄴ. 효용가능경계 상의 한 점은 생산가능곡선 상의 한 점과 대응관계에 있다.
ㄷ. 효용가능경계 상의 일부 점에서만 $MRS = MRT$가 성립한다.
ㄹ. 소비에 있어서 계약곡선을 효용공간으로 옮겨 놓은 효용가능곡선의 포락선(envelope curve)이다.
ㅁ.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점들의 궤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효용가능경계가 단순한 소비 효율의 집합인지, 생산과 소비를 함께 고려한 경제 전체의 파레토 효율적 효용조합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효용가능곡선은 주어진 생산물 조합에서 소비의 계약곡선에 있는 배분을 효용공간으로 옮긴 곡선이다. 생산가능곡선 위의 생산물 조합마다 이러한 효용가능곡선이 하나씩 만들어지며, 그 곡선들의 포락선이 효용가능경계이다. 따라서 효용가능경계는 소비 효율뿐 아니라 생산 효율과 생산물 구성의 효율까지 충족하는 효용조합을 나타낸다. 내점해에서는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일치하여 $MRS_A = MRS_B = MRT$가 성립한다. 다만 효용가능경계 자체는 효율성을 나타낼 뿐 공평한 분배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ㄱ X —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만'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효용가능경계의 점은 소비 효율뿐 아니라 생산 효율과 생산물 구성의 효율도 충족한다.
ㄴ O — 효용가능경계의 각 점은 생산가능곡선 위의 어떤 효율적인 생산물 조합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소비배분에 대응한다.
ㄷ X — '일부 점에서만'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통상적인 내점해에서 효용가능경계의 모든 점은 생산물 구성의 효율 조건인 $MRS_A = MRS_B = MRT$를 충족한다.
ㄹ O — 생산가능곡선 위의 각 생산물 조합에서 소비의 계약곡선을 효용공간으로 옮기면 효용가능곡선이 만들어지고, 이 곡선들의 포락선이 효용가능경계이다.
ㅁ X —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라는 표현이 틀리다. 효용가능경계는 파레토 효율적인 점들의 궤적이며, 그중 공평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점의 선택에는 사회후생함수와 같은 별도의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렸으므로 'ㄱ, ㄴ'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ㄱ을 제외하고 옳은 ㄹ을 포함한 'ㄴ, ㄹ'이 올바른 조합이다.
② O — ㄴ과 ㄹ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다.
③ X — ㄷ과 ㅁ이 모두 틀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④ X —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ㄴ, ㄷ, ㄹ'에서 ㄷ을 제외한 'ㄴ, ㄹ'이 올바른 조합이다.
⑤ X — ㄴ과 ㄹ은 옳지만 ㄷ과 ㅁ이 틀렸다. 'ㄴ, ㄷ, ㄹ, ㅁ'에서 ㄷ과 ㅁ을 제외한 'ㄴ, ㄹ'이 올바른 조합이다.

### 오답 포인트

ㄱ의 '소비의 효율성만'과 ㅁ의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가 핵심 함정이다. 효용가능경계는 소비의 계약곡선 하나가 아니라 생산가능곡선 위의 여러 생산물 조합에서 얻는 효용가능곡선들의 포락선이며, 효율성과 공평성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용가능경계가 나오면 먼저 '각 생산물 조합의 효용가능곡선 → 여러 곡선의 포락선' 구조를 떠올린다. 이어 소비 효율, 생산 효율, $MRS = MRT$ 조건은 경계에 포함되지만 공평성은 별도의 사회적 가치판단이라는 순서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효용가능경계는 효율의 경계이지 공평의 경계가 아니다. 효용가능곡선들의 포락선이며, 내점에서는 $MRS_A = MRS_B = MRT$이다.

NoteBase

**문 22. 공공서비스의 수요곡선은 $P = 16 - \frac{1}{2}Q$이고 이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12로 일정할 때,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관료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 규모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 관료의 공공서비스 규모는? (단, P는 공공서비스의 가격, Q는 공공서비스의 규모이다.)**

① 4

② 8

③ 12

④ 14

⑤ 16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직 규모를 극대화하는 관료가 총편익이 총비용을 충당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가장 큰 공공서비스 규모를 선택한다는 점을 이용해 $Q$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역수요곡선은 $P = 16 - \frac{1}{2}Q$이고 한계비용은 $MC = 12$로 일정하다. 효율적 규모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은 지점이지만, 조직 규모 극대화 관료는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작아지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큰 $Q$를 선택한다.

**사용할 공식**

총편익은 역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이므로
$TB(Q) = \int_0^Q \left(16 - \frac{1}{2}q\right)dq = 16Q - \frac{1}{4}Q^2$
한계비용이 12로 일정하므로 총비용은
$TC(Q) = 12Q$
이다. 조직 규모를 극대화하는 양의 서비스 규모에서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경계조건 $TB(Q) = TC(Q)$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총편익과 총비용을 같게 두면
$16Q - \frac{1}{4}Q^2 = 12Q$
이다. 이를 정리하면
$4Q - \frac{1}{4}Q^2 = 0$
$Q\left(4 - \frac{1}{4}Q\right) = 0$
이므로 $Q = 0$ 또는 $Q = 16$이다. 조직 규모를 극대화하는 양의 규모는 $Q = 16$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Q = 4$는 한계수입 $MR = 16 - Q$과 한계비용을 같게 두는 독점 산출량이다. 이 문제의 관료는 독점이윤이 아니라 조직 규모를 극대화하므로, 올바른 규모는 $Q = 16$이다.
② X — $Q = 8$은 $P = MC$, 즉 $16 - \frac{1}{2}Q = 12$에서 얻는 효율적 규모이다. 문제는 효율적 공급 대신 조직 규모 극대화를 가정하므로, 올바른 규모는 $Q = 16$이다.
③ X — $Q = 12$에서는 $TB = 156$, $TC = 144$로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12만큼 크므로 조직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올바른 규모는 두 값이 같아지는 $Q = 16$이다.
④ X — $Q = 14$에서는 $TB = 175$, $TC = 168$로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7만큼 크므로 최대 규모가 아니다. 올바른 규모는 $Q = 16$이다.
⑤ O — $Q = 16$에서는 $TB = 192$와 $TC = 192$가 같고, 이를 넘으면 총비용이 총편익보다 커진다. 따라서 가능한 최대 조직 규모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8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규모이고 ①의 4는 독점이윤 극대화 규모이다. 조직 규모 극대화 관료의 선택을 효율적 공급의 $P = MC$ 또는 독점기업의 $MR = MC$와 혼동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직 규모 또는 예산을 극대화하는 관료가 나오면 역수요곡선을 적분해 총편익을 구하고, 총비용과 같아지는 양의 $Q$ 중 최대 규모를 선택한다. 효율적 규모를 묻는 경우에만 $P = MC$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효율적 공급은 $MB = MC$, 관료의 조직 규모 극대화는 $TB = TC$의 최대 산출량이다.

NoteBase

**문 23. 공공재의 과다공급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수결 투표제도
ㄴ. 정치적 결탁(logrolling)
ㄷ. 다운즈(A. Downs)의 투표자의 무지
ㄹ. 갤브레이드(J. K. Galbraith)의 의존효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공재의 공급을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늘리는 요인과 줄이는 요인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다수결 투표제도와 정치적 결탁은 과다공급 요인이고, 다운즈의 투표자의 무지와 갤브레이드의 의존효과는 과소공급 요인이다.

**핵심 개념**

ㄱ. 다수결 투표제도: 중위투표자가 부담하는 조세가격이 그가 얻는 편익의 몫보다 작으면 중위투표자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많은 공공재를 선택하므로 과다공급이 나타날 수 있다.
ㄴ. 정치적 결탁(logrolling): 서로 다른 사업을 원하는 투표자나 정치인이 상대방의 사업에 표를 주고받으면, 따로 표결할 때 부결될 사업들까지 통과하여 공공재가 과다공급될 수 있다.
ㄷ. 다운즈의 투표자의 무지: 한 표가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작아 정보 수집의 편익이 비용보다 작으므로 투표자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는다. 그 결과 낮은 조세와 작은 예산을 선호하여 공공재가 과소공급될 수 있다.
ㄹ. 갤브레이드의 의존효과: 광고가 사적재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 사적재 소비를 지나치게 부각하고 공공재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게 하므로 공공재가 과소공급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의 다수결 투표제도와 ㄴ의 정치적 결탁은 모두 공공재의 과다공급 요인이다.
② X — ㄷ의 투표자의 무지를 과다공급 요인으로 넣은 부분이 틀렸다. 투표자의 무지는 공공재의 과소공급 요인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③ X — ㄷ은 과소공급 요인이므로 틀렸고 과다공급 요인인 ㄱ이 빠졌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④ X — ㄹ의 의존효과는 공공재의 과소공급 요인이므로 틀렸고 과다공급 요인인 ㄱ이 빠졌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⑤ X — ㄷ의 투표자의 무지와 ㄹ의 의존효과는 모두 공공재의 과소공급 요인이다. 과다공급 원인의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투표자의 무지도 정치 과정의 실패이므로 정부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 다운즈의 투표자의 무지는 공공서비스 편익에 관한 정보 부족이 낮은 조세와 작은 예산의 선호로 이어지는 과소공급설이다. 갤브레이드의 의존효과도 광고가 공공재가 아니라 사적재 수요를 키운다는 점에서 과소공급설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업을 통과시키는 정치적 표결 구조가 지출을 늘리는지, 유권자가 공공재의 편익을 낮게 평가하여 지출 확대에 저항하는지를 구별한다. 다수결에서 낮은 조세가격을 부담하는 중위투표자와 로그롤링은 과다공급 쪽이고, 정보 부족이나 광고로 공공재의 편익·선호가 약해지는 경우는 과소공급 쪽이다.

**암기 포인트**

다수결·로그롤링은 더 많이, 다운즈의 무지·갤브레이드의 의존효과는 더 적게 공급한다.

NoteBase

**문 24.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사회가 선택하는 가치기준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된다.

② 사회후생함수에서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③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④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같아야 한다.

⑤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회후생함수의 일반적 성격과 공리주의·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을 평가하는 함수이며, 그 구체적 형태는 사회가 채택한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의 합을 사회후생으로 본다: $W = \sum_i U_i$.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가장 낮은 효용을 중시하는 최소극대화 원리를 따른다: $W = \min\{U_1, \dots, U_n\}$. 개인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어 합산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회후생함수는 어떤 배분을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지를 나타내므로, 그 형태는 사회가 선택한 가치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② O —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을 사회적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효용을 측정하고 개인 간에 비교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이다. 동일한 가중치로 개인 효용을 합산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형태이며,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가장 낮은 효용을 중시하는 최소극대화 형태로 표현된다.
④ O — 공리주의에서는 개인 효용의 합을 극대화한다. 총소득이 주어진 내부해에서는 한 사람에게 소득을 더 주고 다른 사람에게서 덜어 내어 사회후생을 높일 여지가 없어야 하므로 각 개인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같아진다.
⑤ O — 각 개인의 효용이 증가할수록 사회후생도 증가하는 사회후생함수라면, 사회후생 극대점에서 누구의 효용도 낮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효용을 더 높일 수 없다. 따라서 그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평등'이라는 말 때문에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준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동일 가중치의 효용 합산은 공리주의이고, 평등주의의 핵심은 최저 효용자의 후생을 우선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인 효용을 더하는지, 가장 낮은 효용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먼저 구분한다. 효용의 합이면 공리주의, 최저 효용의 극대화이면 평등주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리주의는 효용의 합, 평등주의는 최저 효용이다.

NoteBase

**문 25. 코즈(R. Coas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성이 있는 경우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고려하는 해결 방안이다.

② 외부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코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외부성 문제가 있는 재화의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④ 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하여 당사자의 한쪽에게 책임을 지게 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

⑤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당사자들의 자발적 거래에 의해 시장실패가 해결된다는 정리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코즈 정리가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식과 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하는 피구적 해결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매우 작을 때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상하면 재산권의 최초 배분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핵심은 정부의 조세 부과가 아니라 명확한 재산권과 자발적 협상이다. 반면 피구적 조세는 정부가 외부비용에 대응하는 세금을 부과하여 사적 비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코즈 정리는 협상을 통해 외부성으로 생긴 비효율을 해소하는 효율성 명제이다. 협상 결과의 소득분배가 공평한지를 보장하는 형평성 명제는 아니다.
② O — 코즈 정리의 조건이 충족되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더라도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효율적인 자원배분 결과는 어느 당사자에게 재산권을 처음 부여했는지와 무관하다.
③ O — 외부비용은 시장에서 재화를 과다 공급하게 하고 외부편익은 과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코즈식 협상은 이러한 시장실패를 줄여 효율적인 공급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방안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하여'이다. 환경세로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은 피구적 조세에 해당한다. 코즈 정리의 방식은 재산권을 명확히 정하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매우 작다는 조건에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상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하는 것이다.
⑤ O — 재산권이 분명하면 당사자들은 권리의 교환과 보상을 협상할 수 있다. 거래비용이 없거나 매우 작다는 조건까지 충족되면 자발적 거래로 외부성에 따른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의 환경세도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코즈 정리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부의 세금 부과'는 피구적 해결이고, '명확한 재산권 아래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이 코즈식 해결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성 해결 수단의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정부가 세금이나 보조금으로 유인을 조정하면 피구적 방식이고, 재산권을 토대로 당사자가 직접 협상하면 코즈 방식이다. 코즈 정리에서는 재산권의 명확성 및 낮은 거래비용이라는 전제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피구는 세금, 코즈는 재산권과 협상이다.

NoteBase

**문 26.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완전한 경쟁의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② 공공재는 그 특성에 의해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③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을 제공한다.

④ 완비되지 못한 보험시장의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⑤ 외부불경제로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과 외부불경제가 시장생산량에 미치는 방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실패는 시장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이다. 주요 원인에는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과 불완전시장 등이 있다.
외부불경제는 한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가 대가 없이 다른 주체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생산의 외부불경제에서는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으므로 시장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많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불완전경쟁에서는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고 생산량이 효율적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으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② O —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하고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우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③ O —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을 검토할 필요조건을 제공한다. 다만 정부개입에도 비용과 정부실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실패의 존재만으로 개입의 타당성이 충분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④ O — 보험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일부 위험에 대한 거래가 성립하지 않거나 충분한 보험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완전시장에 따른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소 생산'이다. 생산의 외부불경제에서는 생산자가 외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게 인식되므로 시장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다해진다. 올바르게는 '외부불경제로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⑤는 외부불경제라는 부정적 표현 때문에 생산량도 적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외부불경제의 핵심은 생산자가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비용을 실제보다 낮게 보고 과다 생산한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의 외부효과 문제에서는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비교한다. 외부불경제이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크므로 시장은 과다 생산하고, 외부경제이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작으므로 시장은 과소 생산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의 외부불경제는 시장의 과다 생산, 생산의 외부경제는 시장의 과소 생산이다.

NoteBase

**문 27.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치적 성향이 대치되는 두 정당의 선거 공약이 차별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② 선호가 모든 투표자 선호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위투표자라 한다.

③ 이 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④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⑤ 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가는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중위투표자 정리의 성립 조건과 정치적 함의, 특히 양당의 정책 공약이 중위투표자의 선호를 향해 수렴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위투표자는 선호의 순서에서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여 그보다 한쪽을 선호하는 사람의 수와 반대쪽을 선호하는 사람의 수가 같아지는 투표자이다.
중위투표자 정리는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형이고 정책 대안이 일차원적으로 배열되는 등의 조건에서 다수결의 정치적 균형이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에서 형성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득표 극대화를 추구하는 두 정당은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 공약을 가운데로 이동시키므로 공약은 차별화되기보다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두 정당의 선거 공약이 차별화되는 것'이다. 양당이 득표를 극대화하려 하면 모두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접근하므로, 중위투표자 정리는 두 정당의 공약이 서로 비슷해지는 정책 수렴을 설명한다.
② O — 선호를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놓이는 선호를 가진 사람이 중위투표자이다.
③ O — 중위투표자 정리는 다수결 아래의 정치적 균형을 설명하지만 그 결과가 자원배분의 파레토 효율성을 언제나 보장한다는 정리는 아니다.
④ O — 각 투표자가 하나의 가장 선호하는 지점을 가지며 그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선호가 낮아지는 단봉형 선호는 중위투표자 정리의 핵심 성립 조건이다. 다봉형 선호에서는 이러한 안정적 다수결 균형이 보장되지 않는다.
⑤ O — 득표를 극대화하려는 정치가는 유권자 분포의 가운데에 있는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이 정리의 정치적 해석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정치적 성향이 대치된다'는 표현 때문에 두 정당의 공약도 차별화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중위투표자 정리가 강조하는 결과는 정당의 이념적 출발점이 아니라 득표 경쟁으로 인한 공약의 중도 수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위투표자 정리 문항에서는 먼저 단봉형 선호와 중간 위치의 투표자를 확인하고, 양당 경쟁의 결론을 '차별화'가 아니라 '중위 선호로의 수렴'으로 판단한다. 또한 다수결 균형의 존재와 파레토 효율성은 별개의 문제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단봉형 선호 → 중위투표자가 결정 → 양당 공약은 중도로 수렴한다.

NoteBase

**문 28. 티부(C. Tiebout)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지방정부가 취한 행동이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④ 각 지역사회가 공급하는 재화와 조세에 대해 주민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⑤ 공공재의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야 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티부 가설이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설명하기 위해 두는 핵심 전제와 최적 지역사회 규모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티부 가설은 주민이 자신이 선호하는 지방공공재와 조세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선호가 표출되고,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를 위해 주민의 완전한 이동성과 정보, 충분히 많은 지역사회, 지역 간 외부효과의 부재 등이 전제된다. 또한 지방공공재 공급에는 혼잡비용 등을 고려한 최적 지역사회 규모가 존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주민이 선호에 맞는 지방공공재·조세 조합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이른바 발에 의한 투표가 가능하므로 완전한 이동성은 핵심 전제이다.
② O — 한 지방정부의 선택이 다른 지역 주민에게 외부효과를 미치면 주민의 이동과 각 지역의 재정 선택만으로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으므로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어야 한다.
③ O — 서로 다른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충분히 많아야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가까운 지방공공재·조세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④ O — 주민이 각 지역의 지방공공재와 조세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지역 간 비교와 합리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⑤ X — 틀린 표현은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야 한다'이다. 티부 가설은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비용이 계속 하락해야 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혼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공재가 최소 평균비용으로 공급되는 최적 지역사회 규모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의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만 보고 효율성의 조건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단위비용이 규모 증가에 따라 계속 하락한다면 일정한 최적 규모가 성립하기 어렵다. 티부 가설에서 중요한 것은 무한한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최적 지역사회 규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티부 가설의 전제는 주민이 알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지, 선택 가능한 지역사회가 충분한지,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는지, 최적 지역사회 규모가 성립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해야 한다는 진술은 전제로 보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티부 가설은 완전한 이동·완전한 정보·다수의 지역사회·외부효과 없음·최적 지역사회 규모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9. 연금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정수입 확보
ㄴ. 세대 내 소득재분배
ㄷ. 시장실패 보완
ㄹ. 온정적 간섭주의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연금보험을 임의적인 민간보험이 아니라 강제가입을 수반하는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경제적 근거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세대 내 소득재분배: 같은 세대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서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관계를 조정하여 노후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이다.
시장실패 보완: 역선택 등으로 민간 연금·보험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거나 노후 위험이 효율적으로 분산되지 않는 문제를 사회보험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온정적 간섭주의: 개인이 근시안적으로 노후 준비를 지나치게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여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재정수입 확보는 정부가 보험료를 거두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뿐, 연금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정당화 근거는 아니다. 따라서 옳은 항목은 ㄴ, ㄷ, ㄹ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이 포함되고 ㄹ이 빠져 있다. 재정수입 확보는 운영 근거가 아니며, 올바른 조합은 세대 내 소득재분배·시장실패 보완·온정적 간섭주의인 ㄴ, ㄷ, ㄹ이다.
② X — ㄱ이 포함되고 ㄷ이 빠져 있다. 재정수입 확보가 아니라 민간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시장실패 보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올바른 조합은 ㄴ, ㄷ, ㄹ이다.
③ X — ㄱ이 포함되고 ㄴ이 빠져 있다. 재정수입 확보가 아니라 같은 세대 안의 소득재분배가 사회보험 방식의 근거이므로 올바른 조합은 ㄴ, ㄷ, ㄹ이다.
④ O — 세대 내 소득재분배, 시장실패 보완, 온정적 간섭주의는 모두 연금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근거이다.
⑤ X — ㄱ까지 포함한 부분이 틀리다. 재정수입 확보는 사회보험 운영의 목적이나 정당화 근거가 아니므로 ㄱ을 제외한 ㄴ, ㄷ, ㄹ이 올바르다.

### 오답 포인트

보험료가 정부 또는 공적 기금의 수입이 된다는 사실과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ㄱ의 '재정수입 확보'를 제도의 정당화 근거처럼 제시한 데 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보험의 근거는 위험분산과 시장실패 보완, 재분배, 개인의 과소 대비를 막는 온정적 간섭에서 찾는다. 단순히 정부가 돈을 걷거나 재정수입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제도 운영의 근거에서 제외한다.

### 암기 포인트

연금 사회보험의 근거는 재분배·시장실패·온정주의이고, 재정수입 확보는 아니다.

NoteBase

**문 30. 기간별 비용과 편익이 아래와 같을 때 공공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단, 할인율은 10%이다.)**

| 구 분 | 0기 | 1기 | 2기 |
|---|---|---|---|
| 비 용 | 3,000 | 0 | 0 |
| 편 익 | 0 | 1,100 | 2,420 |

① $-\frac{3,520}{(1+0.1)^2}$

② $-\frac{520}{(1+0.1)}$

③ 0

④ 100

⑤ 52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시점의 순편익을 할인율 10%로 0기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0기: 비용 3,000, 편익 0

1기: 비용 0, 편익 1,100

2기: 비용 0, 편익 2,420

할인율: 10%

구해야 할 값: 공공사업 순편익의 0기 현재가치

**사용할 공식**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각 시점의 편익 현재가치에서 각 시점의 비용 현재가치를 뺀 값의 합이다.

$NPV = \sum_{t=0}^{n} \frac{B_t - C_t}{(1+r)^t}$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은 그대로 더할 수 없으므로 할인율 $r = 0.1$을 적용해 모두 0기의 가치로 환산한다. 0기의 비용은 이미 현재가치이므로 할인하지 않는다.

NoteBase

### 계산 과정

1. 0기의 순편익 현재가치는 $0 - 3{,}000 = -3{,}000$이다.
2. 1기 편익의 현재가치는 $\frac{1{,}100}{1.1} = 1{,}000$이다.
3. 2기 편익의 현재가치는 $\frac{2{,}420}{(1.1)^2} = \frac{2{,}420}{1.21} = 2{,}000$이다.
4. 따라서 $NPV = -3{,}000 + 1{,}000 + 2{,}000 = 0$이다.

### 선지 판단

① X — $-\frac{3{,}520}{(1+0.1)^2}$는 계산 결과 0과 일치하지 않는다. 0기 비용은 할인하지 않고, 1기와 2기의 편익은 각각 해당 기간만큼 할인해야 한다. 올바른 식은 $-3{,}000 + \frac{1{,}100}{1.1} + \frac{2{,}420}{(1.1)^2} = 0$이다.
② X — $-\frac{520}{1+0.1}$는 모든 현금흐름을 하나의 시점에 합친 뒤 한 기간만 할인한 식이어서 틀리다. 올바르게는 시점별로 할인해 합산하며 결과는 0이다.
③ O — 시점별 현재가치는 -3,000, 1,000, 2,000이므로 그 합은 0이다.
④ X — 100은 시점별 할인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0이다.
⑤ X — 520은 할인하지 않은 명목금액을 단순 합산한 $1{,}100 + 2{,}420 - 3{,}000$의 결과이다. 올바르게는 미래 편익을 할인해야 하므로 현재가치는 0이다.

### 오답 포인트

⑤의 520은 기간이 다른 금액을 할인하지 않고 합산할 때 나오는 함정이다. 또한 0기 비용까지 할인하거나 모든 미래 편익에 같은 할인기간을 적용하면 안 된다. 각 현금흐름은 발생 시점 $t$에 맞추어 $(1+r)^t$로 나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기간의 순편익 $B_t - C_t$을 먼저 구하고, 발생 시점만큼 할인한 뒤 모두 합산한다. 0기 금액은 할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현재가치 계산은 '시점별 순편익 → 시점별 할인 → 합산'의 순서이며, $NPV = \sum \frac{B_t - C_t}{(1+r)^t}$이다.

NoteBase

**문 31.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게 생계안정지원과 동시에 근로 유인을 위한 제도이다.

③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④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⑤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을 공공부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사회보험으로 구분하고 각 제도의 대상 선정 기준과 재원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낮은 근로·사업소득 가구 등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이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하므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한다. 올바르게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이다.

② O.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면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므로 생계안정지원과 근로 유인을 함께 목적으로 한다.

③ O. 공공부조는 별도의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을 지원한다.

④ O.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된다.

⑤ O.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된다. 다만 제도에 따라 국고 지원 등도 함께 투입될 수 있으므로 '기본 재원'이라는 표현이 타당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절대빈곤선'이 함정이다. 과거의 최저생계비 방식과 혼동하기 쉽지만,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사용하므로 상대적 빈곤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⑤는 보험료만으로 운영된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가 기본 재원이라고 했으므로 옳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급자 선정 문구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인지 확인하고, 재원 문구에서는 공공부조는 조세, 사회보험은 보험료가 기본이라는 구분을 적용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지원과 근로 유인을 함께 달성하는 제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초생활보장＝기준 중위소득, 공공부조＝조세, 사회보험＝보험료, 근로장려세제＝소득지원＋근로 유인이다.

NoteBase

**문 32.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리카르도(D. Ricardo)는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러너(A. Lerner)는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③ 통화주의자들은 총수요가 변한다고 하였다.

④ 배로(R. Barro)는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어도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 감면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때 총수요, 미래세대의 부담, 국민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학자·학파별 주장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 핵심 정리

리카르도·배로: 국채발행으로 현재 조세가 줄어도 미래 조세의 현재가치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므로 소비와 총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세·국채의 중립성을 설명한다. 배로는 이를 합리적·이타적 경제주체의 세대 간 연계로 정교화하였다.
러너: 내부채무의 원리에서는 원리금이 같은 국민 사이에서 이전되므로 국가 전체로 본 미래세대의 순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본다.
통화주의자: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는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 구축으로 상쇄되어 총수요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케인즈학파: 국채발행으로 조세부담을 낮추면 처분가능소득과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이다. 리카르도의 등가정리에서는 국채발행에 따른 현재의 감세가 미래의 증세로 인식되므로 소비와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
② X — 틀린 표현은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이다. 러너는 내부채무의 원리금 지급이 미래세대 내부의 납세자에서 채권보유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국가 전체의 순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총수요가 변한다'이다. 통화주의자는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민간투자를 구축하므로 재정확대가 총수요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본다.
④ O — 배로의 리카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현재 감세만큼 미래 조세의 현재가치가 증가한다. 민간저축의 증가가 정부저축의 감소를 상쇄하므로 국민저축과 투자는 변하지 않는다.
⑤ X — 틀린 표현은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이다.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으로 현재 조세부담이 줄면 처분가능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리카르도·배로의 중립성 명제와 케인즈학파의 재정정책 효과를 서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러너의 내부채무는 개인별 납세부담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순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학파를 '리카르도·배로=미래 조세 예상으로 소비·총수요 불변, 러너=내부채무는 국내 구성원 사이의 이전, 통화주의=구축효과, 케인즈학파=소비·총수요 증가 가능'으로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리카르도·배로는 국채 중립, 러너는 내부채무의 국내 이전, 통화주의는 구축효과, 케인즈학파는 총수요 증가이다.

NoteBase

**문 33.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니(Gini)계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② 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③ 앳킨슨(A. Atkinson)지수: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이면 소득이 완전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④ 5분위분배율: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이다.

⑤ 십분위분배율: 상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소득분배지표마다 값의 범위, 평등·불평등을 나타내는 방향, 분자와 분모의 소득계층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는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커지는 지표이다. 달튼의 평등지수는 실제 분배에서의 사회후생을 균등분배에서의 사회후생과 비교한 지표이므로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5분위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누고,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지만, 틀린 표현은 '1에 가까울수록 평등'이다. 올바르게는 0이면 완전평등이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② O - 달튼의 평등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실제 분배의 사회후생이 균등분배의 사회후생에 가까워질수록 값이 1에 가까워지므로 소득분배가 더 평등함을 뜻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1과 1 사이'와 '1이면 완전평등'이다. 올바르게는 앳킨슨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이면 완전평등이고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④ X -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5분위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⑤ X - 십분위분배율의 계층과 비율 방향이 모두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지표의 범위와 평등 방향을 바꾸었고, ④와 ⑤는 상·하위 계층 및 분자·분모를 뒤집었다. 특히 5분위분배율은 클수록 불평등하지만 십분위분배율은 클수록 평등하다는 방향 차이가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표가 불평등지수인지 평등지수인지 확인한 뒤, 분위배율은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계층을 따로 적어 판단한다. 지니계수·앳킨슨지수·5분위분배율은 커질수록 불평등하고, 달튼의 평등지수·십분위분배율은 커질수록 평등하다.

### 암기 포인트

지니·앳킨슨·5분위는 클수록 불평등, 달튼 평등지수·십분위는 클수록 평등이다.

NoteBase

**문 34. 정부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부지출은 동일하다.)**

ㄱ. 현물보조는 현금보조보다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ㄴ. 현물보조는 현금보조보다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ㄷ. 현금보조는 현물보조에 비하여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
ㄹ. 현금보조는 현물보조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이 같을 때 현금보조와 현물보조를 소비자의 선택 자유, 행정·운영비용, 정책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금보조는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소비 항목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선택 가능한 소비묶음이 넓으므로 일반적으로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정책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물보조는 식품·주거·의료 등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비 용도를 통제하기 쉬운 대신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물품의 조달·보관·배분 등에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따라서 ㄱ은 틀리고 ㄴ, ㄷ, ㄹ은 옳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이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현물보조는 현금보조보다 소비자들이 선호한다'이다. 정부지출이 같다면 현금보조는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묶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현물보조보다 선호되거나 적어도 불리하지 않다. ㄴ은 현물의 조달·보관·배분에 추가 비용이 들어 옳다.
② X — ㄱ이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ㄱ은 '현금보조가 현물보조보다 소비자의 선택 자유가 넓어 일반적으로 더 선호된다'로 고쳐야 한다. ㄹ은 현금의 용도를 수급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X — ㄴ과 ㄷ은 모두 옳지만, 옳은 ㄹ이 빠져 있으므로 완전한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 ㄹ이다. 현물보조는 관리비용이 더 크고, 현금보조는 정책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④ X — ㄷ과 ㄹ은 옳지만 틀린 ㄱ이 포함되고 옳은 ㄴ이 빠져 있다. ㄱ은 '현금보조가 현물보조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선호된다'로 고치고, ㄴ을 포함해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 ㄹ이다.
⑤ O — ㄴ, ㄷ, ㄹ이 모두 옳다. 현물보조는 조달·보관·배분 때문에 행정·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현금보조는 정책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의 자유를 준다.

### 오답 포인트

현물보조가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쉽다는 장점과 소비자가 현물보조를 더 선호한다는 판단을 혼동하기 쉽다. 정부나 정책 집행자의 통제 가능성은 현물보조가 높지만, 소비자의 선택 자유와 효용은 일반적으로 현금보조가 더 크다. 또한 조합형 문항이므로 옳은 진술을 일부만 고른 ③도 정답이 아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교 기준을 주체별로 나눈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현금보조가 선택의 자유와 효용 면에서 유리하고, 정부의 목적 통제 관점에서는 현물보조가 유리하다. 집행비용은 현물보조가 더 크며,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은 현금보조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현금은 선택 자유가 크지만 오남용 가능성이 높고, 현물은 목적 통제가 쉽지만 행정·운영비용이 크다.

NoteBase

**문 35. 정부의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② 소비 지출이 증가하므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③ 리카르도(D. Ricardo)의 대등정리에 따르면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④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액과 정부 지출 증가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⑤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감세가 소비·화폐수요·총수요에 미치는 효과와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크기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감세는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지만, 감세액 전부가 소비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승수의 절댓값은 정부지출승수보다 작다. 한계소비성향을 $c$라 하면 정부지출승수는 $1/(1-c)$, 정액세 조세승수는 $-c/(1-c)$이다. 리카도 대등정리는 합리적 경제주체가 국채로 충당한 감세를 미래 조세의 증가로 인식하면 현재 소비와 총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감세로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면 거래에 필요한 화폐수요도 증가한다.
② O. 감세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는 소비지출을 늘리므로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③ O. 리카도 대등정리의 가정 아래에서는 국채로 충당한 감세가 미래 조세 부담의 현재가치만큼 저축을 늘리므로 소비와 총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X. 틀린 표현은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이다. 같은 금액이라면 정부지출 증가는 전액 총수요에 직접 들어가지만 감세액 중에서는 한계소비성향만큼만 소비되므로 정부지출 증가의 총수요 확대 효과가 더 크다. 올바르게는 '구축 효과가 없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감세보다 정부지출 증가의 총수요 확대 효과가 더 크다'이다.
⑤ O.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금액만큼 함께 줄이면 세입 감소액과 지출 감소액이 같아 재정수지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지출 감소 효과가 감세의 소비 증가 효과보다 커서 균형재정승수에 따라 총수요와 국민소득은 그 금액만큼 감소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감세액과 정부지출 증가액이 같다는 사실을 정책 효과까지 같다는 뜻으로 바꾼 함정이다. 정부지출은 전액이 총수요에 직접 반영되지만 감세는 일부가 저축되므로 승수의 절댓값이 더 작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일 금액의 재정정책을 비교할 때는 최초 총수요 변화부터 본다. 정부지출 증가는 전액, 감세는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금액만 소비로 이어지므로 정부지출승수의 절댓값이 더 크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금액만큼 바꾸면 균형재정승수가 1임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같은 금액이면 정부지출 효과가 감세 효과보다 크고,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금액만큼 함께 바꾸면 소득은 그 금액만큼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NoteBase

**문 36.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것은?**

① 피구세

② 푸드 스탬프

③ 오염 배출권

④ 환경 투자 보조금

⑤ 거래 가능 어획 쿼터제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 경제주체가 그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자신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내부화 수단과 단순한 소득지원 정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외부효과의 내부화는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의 차이를 세금, 보조금, 배출권 거래, 재산권 설정 등의 유인으로 줄이는 것이다. 반면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현물급여로서 분배·복지 정책에 해당한다.

### 선지별 해설

① O —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하여 사적 한계비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게 하므로 내부화 수단이다.
② X —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현물급여이므로 외부효과를 가격이나 재산권에 반영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푸드 스탬프가 외부효과의 내부화 수단이다'라는 분류이며, 올바르게는 푸드 스탬프는 소득재분배·복지 정책이다.
③ O — 오염 배출권은 허용된 배출 권리를 거래하게 하여 배출에 기회비용을 부여하고, 감축비용이 낮은 주체가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하므로 오염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
④ O — 환경 투자 보조금은 오염 저감 투자나 환경 개선 활동의 사적 비용을 낮추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해당 활동을 늘리므로 외부효과의 내부화 수단이다.
⑤ O — 거래 가능 어획 쿼터제는 총어획량을 제한한 뒤 어획 권리를 배분·거래하게 하여 어족자원의 희소가치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므로 남획이라는 공유자원 외부효과를 완화한다.

### 오답 포인트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모든 선지를 같은 범주로 묶기 쉽다. 핵심은 정책 주체가 아니라 외부비용·외부편익 또는 자원의 희소가치를 경제주체의 유인에 반영하는지 여부이다. 푸드 스탬프는 구매력을 지원할 뿐 외부효과의 유인을 조정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수단이 세금·보조금·거래 가능한 권리·재산권을 통해 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비용·편익의 차이를 줄이는지 확인한다. 그 차이를 줄이면 내부화 수단이고, 단순한 소득지원이나 복지급여이면 내부화 수단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외부효과 내부화는 피구세·보조금·거래권, 푸드 스탬프는 복지급여이다.

NoteBase

**문 37. 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 편익(PMB), 생산의 사적 한계 비용(P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 피해(MD)이다.** $PMB = 600 - 4Q$ $PMC = 6Q$ $MD = 2Q$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의 크기는? (단, Q는 생산량이다.)**

① 25
② 40
③ 50
④ 80
⑤ 1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때 사회적 한계비용을 구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찾고, 그 생산량에서의 한계 외부 피해만큼 피구세를 부과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PMB = 600 - 4Q$, $PMC = 6Q$, $MD = 2Q$이다.
구해야 할 값: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단위당 피구세이다.
주의할 조건: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이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에 한계 외부 피해를 더한 값이다.

**사용할 공식**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 = PMC + 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 $Q^*$는 $PMB = SMC$를 만족하며, 최적 피구세는 $t = MD(Q^*)$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는 외부 피해를 세금으로 내부화해야 사적 의사결정의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사회적 한계비용을 구하면 $SMC = 6Q + 2Q = 8Q$이다.
2. 사회적 최적 조건을 적용하면 $600 - 4Q = 8Q$이므로 $12Q = 600$, 따라서 $Q^* = 50$이다.
3. 최적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 외부 피해이므로 $t = MD(50) = 2 \times 50 = 1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25는 $MD(Q^*)$가 아니다. 틀린 값 25는 올바르게는 100이다.
② X — 40은 $MD(Q^*)$가 아니다. 틀린 값 40은 올바르게는 100이다.
③ X — 50은 세액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생산량 $Q^*$이다. 틀린 값 50은 올바르게는 피구세 100이다.
④ X — 80은 $MD(Q^*)$가 아니다. 틀린 값 80은 올바르게는 100이다.
⑤ O — $Q^* = 50$에서 $MD = 2Q = 100$이므로 최적 피구세는 100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50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한 뒤 이를 피구세로 착각하게 하는 값이다. 피구세는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그 생산량에서의 한계 외부 피해이므로 $MD(50)$을 한 번 더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정적 생산 외부효과 문제에서는 먼저 $SMC = PMC + MD$를 만들고, $PMB = SMC$로 $Q^*$를 구한 다음, 마지막에 $t = MD(Q^*)$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최적 생산량은 $PMB = SMC$, 최적 피구세는 그 생산량에서의 $MD$이다.

NoteBase

**문 38. 분배에 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따른다.

② 바람직한 분배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지 않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③ 벤담(J. Bentham)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④ 불균등한 소득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

⑤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리주의의 사회후생 극대화 기준과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리주의는 개인들의 효용을 합한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드는 분배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고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같다면 소득을 균등하게 나눌수록 효용의 합이 커진다. 반면 사람마다 효용함수가 다르거나 생산 유인을 고려하면 불균등한 분배도 사회 전체의 효용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최소극대화 원칙은 효용의 합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를 최대한 개선하려는 롤스의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최소극대화의 원칙'은 공리주의의 기준이 아니라 롤스의 분배 원칙이다. 공리주의의 바람직한 분배는 개인 효용의 총합, 즉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라고 고쳐야 한다.
② O.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각 개인의 효용을 합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용 차이 때문에 최적 분배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다.
③ O. 벤담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내세우며 사회 구성원 효용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상태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④ O. 공리주의는 분배의 균등 자체가 아니라 효용 총합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효용함수의 차이 또는 소득 획득과 관련된 생산 유인 때문에 불균등한 소득 분배가 총효용을 더 크게 한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⑤ O.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적은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할 때 전자의 효용 감소보다 후자의 효용 증가가 더 클 수 있다. 이는 공리주의적 재분배 논의에 필요한 핵심 가정이며, 동일한 효용함수까지 가정하면 균등 분배의 근거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최소극대화'를 사회후생 극대화와 혼동하기 쉽다. 공리주의는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고,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몫을 극대화한다. 또한 한계효용 체감만으로 언제나 완전한 균등 분배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결론에는 동일한 효용함수 등의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용의 총합·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면 공리주의, ‘최소 수혜자·가장 불리한 사람의 몫 극대화’이면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으로 판단한다. 공리주의가 반드시 균등 분배를 뜻하는지도 효용함수의 동일성, 한계효용 체감, 생산 유인 조건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리주의는 효용의 합, 롤스는 최저 효용의 극대화이다.

NoteBase

**문 39.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

② 공적연금은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③ 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준비금을 적게 보유할 수 있다.

④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⑤ 공적연금은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물가상승 위험의 부담, 가입 방식, 재정 방식, 상품 선택의 폭, 위험 분담 측면에서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며 강제가입과 사회적 위험 분담을 바탕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물가에 연동하여 급여의 실질가치를 보호하기 쉽고,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거액의 준비금을 미리 적립할 필요가 작다. 사적연금은 개인이 민간 상품을 선택하여 노후소득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 설계에는 유리하지만, 일반적인 명목급여형 상품에서는 물가상승 위험을 가입자가 부담하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이다. 일반적으로 물가에 맞추어 급여의 실질가치를 조정하기 쉬운 쪽은 공적연금이며, 사적연금은 명목액이 정해진 경우 물가상승으로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사적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이다.
② O — 사적연금에서는 기대수명이 길다고 예상하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이 생길 수 있다. 공적연금은 강제가입을 통해 위험이 다른 사람을 넓게 가입시키므로 이러한 역선택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③ O — 공적연금은 현세대 가입자의 보험료로 현세대 수급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완전적립식 사적연금보다 준비금을 적게 보유할 수 있다.
④ O — 사적연금은 가입자가 급여 형태, 납입 방식, 보장 수준 등을 선택할 수 있어 획일적인 공적연금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쉽다.
⑤ O — 사적연금에서는 개인이 위험을 공동체나 보험자에게 이전한 뒤 예방·저축 행동을 줄이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 공적연금은 강제적인 기여와 광범위한 위험 공동부담 구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 오답 포인트

①은 물가연동의 주체를 서로 뒤바꾼 선지이다. '민간 상품이 더 다양하다'는 사실과 '사적연금이 물가상승 위험을 더 잘 보장한다'는 주장은 다르다. 또한 ③은 모든 공적연금이 적립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부과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 사적연금보다 적은 준비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적연금은 강제가입·물가연동·사회적 위험 분담·부과방식 가능성에, 사적연금은 자발적 선택·상품 다양성·개인별 적립에 연결하여 판단한다. 선지에서 두 제도의 장점을 서로 바꾸어 놓았는지를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공적연금은 강제가입·물가보호·위험공동부담, 사적연금은 선택의 다양성이다.

NoteBase

**문 40. 특정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활용하는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실성등가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회피적(risk averse)이다.

② 확실성등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수익 분포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험회피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③ 위험중립적(risk neutral)인 개인의 경우 위험 프리미엄은 0이며 확실성등가는 기대소득과 일치한다.

④ 확실성등가는 프로젝트의 기대소득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⑤ 위험회피적인 개인의 경우 위험한 기회로부터 기대소득보다 확실성등가가 항상 작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확실성등가와 위험 프리미엄의 관계를 이해하고, 위험회피도가 커질 때 확실성등가가 어느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실성등가는 불확실한 소득이 주는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이다. 즉, 소득을 $Y$, 효용함수를 $u$라 하면 $u(CE) = E[u(Y)]$를 만족하는 $CE$이다.
위험 프리미엄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포기할 의사가 있는 기대소득의 일부이며, $\pi = E[Y] - CE$이다. 같은 위험한 프로젝트를 비교할 때 위험회피도가 클수록 위험 프리미엄은 커지고 확실성등가는 작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확실성등가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회피적이다'이다. 같은 위험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 위험회피적일수록 위험 프리미엄을 크게 요구하므로 확실성등가는 더 작아진다. 올바르게는 '확실성등가가 작을수록 더 위험회피적이다'이다.
② O — 확실성등가는 수익의 확률분포에 따른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이므로, 수익 분포와 개인의 효용함수 또는 위험회피도에 관한 정보가 모두 필요하다.
③ O — 위험중립자는 기대소득만으로 대안을 평가하므로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 프리미엄은 0이고 $CE = E[Y]$이다.
④ O — 위험 프리미엄의 정의가 $\pi = E[Y] - CE$이므로 이를 정리하면 $CE = E[Y] - \pi$가 된다.
⑤ O — 위험회피자의 효용함수는 오목하므로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소득의 확실성등가는 기대소득보다 작다. 따라서 $CE < E[Y]$이고 그 차이가 양의 위험 프리미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위험회피도가 크다'는 말과 '확실성등가가 크다'를 같은 방향으로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위험회피도가 커질수록 커지는 것은 위험 프리미엄이고, 확실성등가는 오히려 작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pi = E[Y] - CE$를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위험한 대안에서 위험회피도가 커지면 $\pi$는 커지고 $CE$는 작아지며, 위험중립이면 $\pi = 0$이어서 $CE = E[Y]$가 된다.

**암기 포인트**

위험회피도 상승 → 위험 프리미엄 상승 → 확실성등가 하락이다.

NoteBase